

##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사업연도		연결모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			
법인구분		연결집단 계	연결모법인	연결자법인	연결자법인	연결취득자법인		
자법인구분코드								
연결법인명								
사업자등록번호								
각 연결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	연결과세 표준계산	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(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)						
		②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(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배분액)						
		③ 연결 이월결손금						
		④ 비과세소득						
		⑤ 소득공제액						
		⑥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(②-③-④-⑤)						
	연결산출 세액 및 납부할 세액계산	⑦ 법인세율						
		⑧ 연결산출세액						
		⑨ 연결세율(⑧÷⑥)						
		⑩ 연결법인별 산출세액						
		㉗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						
		㉘ 조정 연결산출세액						
		㉙ 결손금 조정세액						
		⑪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						
		⑫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						
		⑬ 가산세액						
		⑭ 가 감 계(⑩-⑪-⑫+⑬)						
		기납부 세액	⑮ 중간에납세액					
			기한내 납부	⑯ 원천납부세액				
				⑰ ( )세액				
⑱ 소 계(⑮+⑯+⑰)								
⑲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								
⑳ 합 계(⑱+⑲)								
㉑ 감면분 추가납부세액								
㉒ 차감 납부할 세액(⑭-⑳+㉑)								
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	양도 차익 ㉓ 등기자산							
	㉔ 미등기자산							
	㉕ 비과세소득							
	㉖ 과세표준							
	㉗ 세율							
	㉘ 연결산출세액							
	㉙ 감면세액							
	㉚ 공제세액							
	㉛ 가산세액							
	㉜ 가 감 계(㉘-㉙-㉚+㉛)							
㉝ 기납부세액								
㉞ 차감 납부할 세액(㉜-㉝)								
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	㉟ 과세대상 미환류소득							
	㊱ 세율							
	㊲ 산출세액							
	㊳ 가산세액							
	㊴ 이자상당액							
㊵ 납부할 세액(㊲+㊳+㊴)								
세액계	㊶ 차감 납부할 세액 계(㉞+㊵+㊶)							
	㊷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							
	㊸ 납부(환급)할 세액(㊶-㊷)							
	㊹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(㊶-⑬-㉑-㉒-㉓+㉔)							
	㊺ 분납할 세액							
	㊻ 차감납부세액							

작성 방법

1.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란: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.

법인구분	연결모법인	연결자법인	연결취득자법인
코드	100	200	300

\* 연결자법인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구분

- 연결자법인: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
- 연결취득자법인: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

- 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란: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(별지 제76호의7서식)의 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②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: 연결소득 조정명세서(별지 제76호의7서식)의 ㉕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③ 연결 이월결손금란: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(별지 제76호의12서식)의 ⑩ 공제대상 결손금 배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④ 비과세소득란: 연결법인별로 비과세소득명세서(별지 제6호서식)의 ⑥ 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 차감비과세금액란의 ⑫ 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. 다만, ②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③ 연결 이월결손금을 각각 차감한 금액이 음수(-)인 경우에는 "0"을 적습니다.
- ⑤ 소득공제액란: 소득공제조정명세서(별지 제7호서식)의 ⑬ 합계란의 ⑧ 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. 다만, ②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③ 연결 이월결손금, ④ 비과세소득을 각각 차감한 금액이 음수(-)인 경우에는 "0"을 적습니다.
- ⑧ 연결산출세액란: ⑥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「법인세법」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⑩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.
  - 가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20조의22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없는 경우: ⑥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⑨ 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
  - 나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20조의22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: 해당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. 다만,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 가목의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다.
- ⑪ 각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: 연결법인별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(갑)[별지 제8호서식(갑)]의 ㉖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⑫ 각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: 연결법인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(갑)[별지 제8호서식(갑)]의 ㉗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⑬ 가산세액란: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[별지 제76호의17서식(갑)]의 ⑥ 가산세액 합계란의 금액과 ⑬ 지출증빙 등란의 금액을 적습니다(중간에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).  
연결모법인은 ⑥ 가산세액 합계란의 금액과 ⑬ 지출증빙 등 가산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더하여 적고, 연결자법인은 ⑬ 지출증빙 등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- 기납부세액계란: 기납부세액 계란(㉘ · ㉙)
  - 가.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(중간에납)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,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.
  - 나.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.
- ㉑ 감면분 추가납부세액란: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(을)[별지 제8호서식(을)]의 ⑩ 이월과세 합계란의 금액과 ⑫ 추가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.
- ㉒ 가산세액란: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(갑)[별지 제76호의17서식(갑)] ⑫ 토지등 양도소득란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.
- ㉓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란: 연결법인별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14호서식)의 ㉔ 금액(음수인 경우 '0')을 적습니다. 다만, 2017. 1. 1.부터 2017. 12. 31.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㉔금액에 종전의 「법인세법」(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)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2호의2서식)의 ㉕금액(음수인 경우 '0')을 합산하여 적습니다.
- ㉔ 가산세액란: 가산세액계산서(별지 제9호서식)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⑥ 가산세액을 적습니다.
- ㉕ 이자상당액란: 연결법인별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0조의3제2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종전의 「법인세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) 제93조제20항에 따른 금액[종전의 「법인세법」(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) 제56조제8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]을 합산하여 적습니다.
- ㉖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란: "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(별지 제52호의4서식)"의 ⑩란의 연도별 공제대상금액을 적습니다.
-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.